

2024년산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 고시

「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18조에 따라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제1조(상품 품질기준)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 규격은 2S(49mm이상)부터 2L(70mm이하)로 한다. 단, 45mm이상 49mm미만인 경우에는 광센서 선별기 및 휴대용 광센서 당도 측정기로 측정된 당도가 10브릭스(Brix) 이상은 상품으로 한다.

제2조(시행일)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.

2024년 9월 12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